

<1>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1.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기준 신설

개정 사항	세부 내용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	○ 일반사용기준에 혼합 사용 색소의 총량이 해당 식품유형에 허용된 색소 중 가장 높은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2. 분말향료 제조방법 확대를 위한 정의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천연향료 합성향료	○ 분말향료를 허용하기 위하여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 정의 개정 - 향료를 분말 형태로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텍스트린, 전분, 및 식품첨가물(변성전분, 아라비아검, 이산화규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희석제 범위를 확대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품 목 명	개 정 내 용
과산화수소제제 등 12개 품목의 모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식품등의 제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 식품의 제조 이외의 소분·판매, 식품 이외의 식품첨가물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4. 시험법 개선 등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개 품목 원자흡광광도법 등 일반시험법 2종	○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기기 및 표준품의 확대 등 시험법 개선
비타민D ₂	○ 비타민D ₂ 의 영문명을 국제적 사용되는 명칭인 Ergocalciferol로 변경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바이오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심사 절차 개선

개정 대상	개 정 내 용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절차	○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에 있어서 기존 제출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는 기존 자료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

2. 독성시험 항목 명칭 통일과 심사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

개정 대상	개 정 내 용
[별표 1~ 별표 6]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 효소제 등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은 해당 생산균주의 진위확인, 균주의 잔류, 섭취 경험 등 제출 ○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 분야별로 상이한 독성시험 항목 명칭을 통일하고,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서 등 서식 정비 - 단회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90일), 유전독성시험 등 독성시험 항목 명칭 통일 - 인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 요령을 정비

3.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 시 반려 기준 신설

개정 대상	개 정 내 용
제출자료 반려 기준 신설	○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